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779

발의연월일: 2022. 5. 27.

발 의 자:이 용・박성민・김정재

박성중 · 강민국 · 배준영

김석기 • 이채익 • 서정숙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,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 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.

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,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,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) ① 건조물 등에 포장(包藏)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방법,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재의소유권 판정에 있어 해당 일반동산문화재가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재의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소유 또는 점유(승계하여소유 또는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소

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재 정 안 제61조의2(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) ① 건조물 등에 포장(包藏)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발견자나 그건조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방법,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필요한 사항은 「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

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소유 또는 점유(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 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한다.